

2026년도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직원 채용 공고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과 함께 지역발전을 선도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6년 6월 08일

재단법인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대표이사

1. 채용 개요 및 근무조건

가. 채용개요

구 분	채용직종	채용직급	채용인원	직 무 내 용	근무예정지
정규직	연구직 (학예)	2급	1명	· 학예연구부 총괄 ※ 직무기술서 참조	독립운동기념관 (안동)
	사무직	4급	1명	· 기관 운영 및 사업 추진 관련 행정 업무 전반 ※ 직무기술서 참조	재단 사무국 (안동)
	사무직	5급	1명	· 기관 운영 및 사업 추진 관련 행 정업무 전반 ※ 직무기술서 참조	

나. 근로조건

고용 형태	채용 직종(분야)	근 로 기 간	근 무 시 간	보 수
정규직	연구직(학예)	기간의 정함이 없음. (정년 만60세)	주5일(주40시간), 1일 8시간(9~18시)	재단 보수규정 및 내부규정에 따름
	사무직			

2. 시 험 방 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자격요건 적격 여부 심사(적격자 전원 합격)

나. 2차 시험(면접전형):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토

○ 품행 및 성실성,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발전가능성, 의사표현 등

다.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결과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

3. 응 시 자 격

가. 공통자격 (기준일: 채용공고일 전일)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 60세 이하인 자
-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 재단 인사규정 16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1.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나. 응시자격

채용 직종(분야)	자 격 요 건
연구직(학예)	1. 채용예정 직무분야 4년제 대학 조교수 이상 자격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 경력을 가진 자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수료자로서 5년 이상 관련 경력을 가진 자 4.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사무직 4급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상당)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학사학위 소지자로 3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사무직 5급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8급(상당)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해당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전문학사 학위소지자로 2년 이상 관련 경력을 가진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고등학교 졸업자로 5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시 험 일 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6. 6. 8.(월) ~ 2026. 6. 18.(목) 18:00 까지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홈페이지 ▶경상북도청, 안동시 채용공고 ▶클린아이 잡플러스 ▶이메일접수 (crudewind@815gb.or.kr)
1차 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6. 22.(월) 예정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홈페이지
2차 시험	면접전형	2026. 6. 26.(금) 예정	▶개별통보(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합격자 발표		2026. 6. 30.(화) 예정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홈페이지
임용예정일		2026. 7. 6.(수) 예정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홈페이지

※ 위 일정은 재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방법

- 1) 접 수 처 : 이메일 접수(crudewind@815gb.or.kr)
- 2) 제출방법 : 스캔 후 하나의 파일(PDF 등)로 이메일 발송(서명날인 必)
 - 제목 및 첨부 파일명: 응시원서(분야_지원자 성명), (예시: 교육직(5급)_홍길동)

※ 원서접수와 관련된 내용은 사무국(054-820-266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기간 : 2026. 6. 8. ~ 6. 18.(단, 시작일 09:00부터, 마감일 18:00까지)

※ 마감일 18시까지 응시원서가 최종 접수 완료되어야 합니다. (18시까지 최종 접수 완료되지 않은 응시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제출서류

- 1) 응시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반드시 자필 서명)
- 2)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반드시 자필 서명)
- 3)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학예직,사무직 포함)
-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반드시 자필 서명)
- 5)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 6) 결격사유 확인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 7)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확인 가능하여야 함) 1부
- 8) 학위증명서 및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근무기간,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를 모두 제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 9) 관련 자격증(해당자) 각 1부

※ 외국어로 된 제 서류(학력, 증명서 등)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본인이 서명하여 제출

※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

6.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 비율표(기준일 : 채용공고일 전일)

구 분	가 점 대 상	가산비율	증빙서류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면접심사에서 만점의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의사상자 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와 그 배우자 또는 자녀	면접심사에서 만점의 5%	취업보호 기관의 확인서

※ 위에 해당하는 자는 면접전형시 가산점 적용

※ 중복 시 유리한 것 1개지만 적용하며, 제출하는 증빙서류와 상이한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나.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1)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 2)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3) 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의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또는 시·군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원서접수 기간 내에 이메일(crudewind@815gb.or.kr)로 증서번호 등 관련정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잘못 입력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산비율·보훈번호 / 의사상자 등은 가산비율·의사상자 증서번호 입력

7.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면접시험 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해당 면접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나. 응시자는 응시자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필수 제출서류(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라.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마.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미달일 경우 재공고 하고, 재공고 시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을 경우 응시자를 대상으로 심사합니다. 1차 공고 시 응시원서를 제출한 자는 재공고기간에 제출한 자료로 간주하며, 재공고시 일정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하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반환합니다.
- 아. 상기 채용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사무국 행정지원팀 (☎054-820-26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응 시 원 서

응시분야	예시) 연구직(학예) 2급, 사무직 4급, 사무직 5급	접수번호	
------	--------------------------------	------	--

1. 인적사항

성 명	[한글]	[한글]	
	[영문]		
현 주 소			
연 락 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e-mail)	
	[비상연락처]		

2. 학력사항

학 위	전 공	졸업년월
박사, 석사, 학사 순으로 기재		0000년 00월 졸업

3. 병역사항

병 역	☐ 병역필(복무기간 :) ☐ 면제자(여성포함)
-----	--

4. 자격사항(응시분야 직무 관련 국가공인 기술/전문/민간 자격)

자격 및 면허	종 류	취득년월일	어 학	외국어명	점수	검정기관

5. 경력사항(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건 정확히 기입)

근무처/고용형태	근무부서	직 급	담당업무	근무기간	퇴직사유
				~	
				~	
				~	
				~	

6. 기타 주요업적 등

상훈명	내용	수상일자	수여기관

7. 가산점 특전 및 우대 사항

구 분	내 용	발급기관

※ 항목별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칸수 조정가능

※ 응시자 유의사항: 지원자는 반드시 성명과 (인) 날인(자필서명 또는 도장날인) 할 것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지원분야와 관련된 본인의 보유 역량을 기술하시오.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 상대방을 성공적으로 설득했던 경험을 상황·행동·결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최근 5년 내에 성취한 일 중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위해 한 일을 기술하시오.
최근 5년 내에 직면했던 삶의 어려움이 무엇이었으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기술하시오.
직무수행을 통하여 문제해결능력을 발휘한 경험이 있으면 기술하시오.
공직유관기관 직원으로서의 직업윤리가 왜 중요한지 본인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관련업무에 가장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인재상을 기술하시오.
※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암시하는 내용과 정치성향, 종교, 신체정보 등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와 개인정보는 기재하지 말 것 ※ A4용지 3매 이내로 본인이 직접 작성(자율형식, 워드프로세스 활용) ※ 대리 작성, 허위 작성시에는 합격 취소 등 불이익 부과
본인은 상기 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 칸이 부족할 경우 추가하거나 늘릴 수 있음.

【별지 제3호 서식】

직 무 수 행 계 획 서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 서론, 본론, 결론 형식으로 추진전략, 추진계획, 기타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작성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기재), 목차, 요약서 본문 순으로 작성
- 분량은 A4용지 5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문서규격

- 문서여백 : 상, 하, 머리말, 꼬리말 각 15mm,
좌, 우 20mm, 제본 0mm
- 글씨 : 휴먼명조, 제목 18pt 진하게, 본문 15pt, 쪽번호매김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재단법인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①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성명, 주소, 메일, 전화번호, 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가정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및 성범죄 경력 유무 등 조화·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II.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 항목: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자격번호 등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화·확인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2026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응시자 본인의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여, 부)에 “○” 표시>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여, 부)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여, 부)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여, 부)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는지---- (여, 부)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여, 부)

4-2. 위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었는지 --- (여, 부)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 (여, 부)

위 문항의 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결 격 사 유 확 인 서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1.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본인은 결격사유를 확인하였으며, 해당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대표이사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